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1039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의 2018. 8.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장원정

[별지1]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 302㎡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벽돌조 평층레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층 93.87㎡ 지층 104.67㎡ 2층 94.68㎡ 플.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주식회사는 2017. 4. 28. 위 C 에게 금 3,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2. 4. 28.,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 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이후 위 C 을 상대로 위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153129), 2021. 2. 18.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 은 원고에게 금 65,892,216원 및

그 중 금 29,908,326원에 대하여 2022.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어머니는 소외 E였는데, 위 E는 2018. 6. 7.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E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E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8. 9. 18.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리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2022. 4. 26.자)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E는 2018. 6. 7. 자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F, G, H, B(피고, 수익자), I, J, C(채무자)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형제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1/7'입니다.

나. 위 E는 2018. 6. 7.자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던 때는 '2018. 8. 31.'입니다.(갑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18. 8. 31.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1/7 지분은 소외 C이 상속받았어야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